

청약안내문[특별공급(공통사항)] (1/3)

청약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청약자격 및 요건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특별공급 청약 일정

신청일자	신청방법	당첨자 발표
2026.05.26(화) (09: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06.05(금)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로그인 후 개별 조회

※ 청약 신청 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발급(가입은행 홈페이지 인증센터) 또는 네이버 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발급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아크로 리버스카이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가능(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소유	무주택세대구성원 (본인 및 그 세대원 모두 무주택요건)					
기본 자격	- 해당 기관에서 추천 받은 자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자 (태아 및 입양 포함)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 만 65세 이상 피부양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 1순위 해당하는 자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한 자를 포함)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배정 규모	전용85㎡이하의 10% 범위 내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	전용85㎡이하의 23% 범위 내	주택 건설량의 3% 범위 내	전용85㎡이하의 9% 범위 내	
소득/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주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청약예금통장으로 전환 필요)					
요건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기관추천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청약 통장	구분	아크로 리버스카이 (타입)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예치금	전용면적 85㎡ 이하	36, 44, 51, 59, 84	300만원	2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6, 44, 51, 59, 84	6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36, 44, 51, 59, 84	1,000만원	4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전 타입 가능	1,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예비입주자	타입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같은 주택형 다른 공급유형의 낙첨자들과 함께 추첨)					

청약안내문[특별공급(공통사항)] (2/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구분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배제		혼인특례	출산특례
법 조항	제55조의3 제1항		제55조의3 제2항	제55조의3 제3항
시행일	2024. 3. 25.		2025. 3. 31.	
주택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에 따른 모든 청약제한사항 배제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이력 배제 ※ 혼인 전 주택 처분 안료 시	본인의 혼인 전 당첨에 따른 모든 청약제한사항 배제	'24. 6.19.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특별공급 1회제한 배제
적용유형	신혼부부, 생애최초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횟수제한	제한없음		본인 기준 1회	세대 기준 1회
비고	<p>※ '혼인 전'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신고일 전을 의미함.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신고일 전)</p> <p>※ '출산특례'는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및 '24.6.19. 이후 태어난 사람을 입양한 경우를 포함)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이 혼인 전/후, 출산 전/후인지는 불문함.</p> <p>※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는 사용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사용 이력을 별도 관리하지 않으며, '혼인특례' 및 '출산특례'는 본인 또는 세대 기준 1회 제한이 있으므로 청약신청 시 고객이 직접 특례 사용 여부를 선택하며, 특례를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례 사용 이력이 관리됨 *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 당첨자 또는 무효자로 처리되는 경우 특례 사용 이력 삭제</p> <p>※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부부가 모두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특별공급 중복 당첨된 경우, '24.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에 따라 先신청자 유효, 後신청자 무효 처리한 후 유효자에 대해 특례 자격요건 등 검증 진행 * 무효자는 당첨 사실이 삭제되므로, 특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p>			

구분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안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p>•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div>	<p>-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p> <p>-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p> <p>-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p>-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p>※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p> <p>※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p> <p>※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p> <p>※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p> <p>※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 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p>	

청약안내문[특별공급(공통사항)] (3/3)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용			
공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모두 부적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절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부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청약이 불가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 전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 불가로 부적격될 수 있음) 			